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관
람

기관
의
장

제1862호 2024. 8. 26.(월)

차 례

예 규

- 인천광역시서구 예규 제106호 인천광역시 서구 스토킹 예방 지침 ————— 1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 1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6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7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04호 보전산지 지정(산지구분도)(안) 공고 ——— 2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16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을 위한 행정예고 ——— 22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1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0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19호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51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733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해든어린이공원)
결정(변경) 관련 주민 공람 공고 ————— 55

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스토킹의 특성, 징후 및 사례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5.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6. 민원인, 고객 등 업무 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7. 그 밖에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등) ① 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고충처리부서에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처리업무 담당자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고충상담창구는 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고충상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 이를 겸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 및 처리
3.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의 검토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부서 간 협조·조정
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그 밖에 스토킹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제8조의 보호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피

해자 상담 후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상급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 나.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 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 라.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 마. 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 바.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하여 언급하는 행위
3. 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4.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⑧ 구청장은 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스토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충 상담을 받은 상급자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고충상담원의 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고충 상담 및 처리) ① 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을 접수 받은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스토킹 피해 및 위협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제8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① 구청장은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원, 피해 내용 등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등) ①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할 수 있다.
- ⑤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하여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 ⑦ 스토킹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 ⑧ 고충상담원은 해당 사안이 성희롱·성폭력이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등과 복합된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사안 처리 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불리한 처우 금지 및 비밀유지) ① 구청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신고, 협력, 제8조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를 요구·신청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 구청장은 소속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피해사실을 이유로 또는 제8조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를 요구·신청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집

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2차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구청장, 고충상담원 등 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사안 처리,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기존 설치된 구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구청장이 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여성정책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 중 3명 이상을 외부의 스토킹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

원” 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스톡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구청장이 스톡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4조(조사 등 결과 통지) 구청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제15조(징계) ① 구청장은 스톡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스톡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

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발 방지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발 방지 대책에는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희롱·성폭력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과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스토킹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스토킹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조사결과 및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 행위자 :

(2) 사건 현황 (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스토킹 여부에 대한 판단(2차 피해 포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직인)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24 - 163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8.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명: 인천 서구 가정동 가정2지구 B-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주)서한 (대표 정우필, 조종수)
3. 사업시행 및 면적규모
 - 가.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가정2지구 B-1블록
 - 나. 대지면적: 25,013m²
 - 다. 사업규모: 연면적 70,553.2871m²
 - 라.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429세대,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 마. 사업비: 270,955,760천원
4. 사업기간: 2024. 12. 31. ~ 2027. 6. 30.
5.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의제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끝.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4-16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8.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73번길 29 외 1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략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8.26.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24-8-26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3-488	인천광역시 서구 보도진로73번길 29 (가좌동)	20151113	보도진로 시작지점에서부터 약7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36-25	인천광역시 서구 금사래1길 14 (대곡동)	20230814	금사래길의 시점에서 첫번째 분기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235-5	인천광역시 서구 이음4로 12 (당하동)	20200420	서로를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네번째 도로	
4	인천광역시 서구 월당동 806-5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후로183번길 3-5 (월당동)	20081231	고산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8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260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78 (가좌동)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4-8-26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369-9 (왕길동)	건물열실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2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369-15 (왕길동)	건물열실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3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393-2 (왕길동)	건물열실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4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369-18 (왕길동)	건물열실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5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369-16 (왕길동)	건물열실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6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393-1 (왕길동)	건물열실	20090710	도로 구간 인근에 봉수대가 있었음	
7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7번길 94 (왕길동)	건물열실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8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427번길 96 (왕길동)	건물열실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4,2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1704호

보전산지 지정(산지구분도)(안) 공고

보전산지 지정을 위하여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8.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보전산지지정 대상지 주요내용

대표적인 행정구역의 명칭		도면의 명칭	도엽의 번호	구역의 표시
인천광역시	가정동	김포088	NJ52-9-10-088^김포088	공익용산지
인천광역시	가정동	김포088, 김포098	NJ52-9-10-088^김포088, NJ52-9-10-098^김포098	공익용산지
인천광역시	가정동	김포088	NJ52-9-10-088^김포088	공익용산지
인천광역시	가정동	김포098	NJ52-9-10-098^김포098	공익용산지

- 근거: 「산지관리법」 제4조 및 제5조

- 내용: 용도지역 변경(미지정→보전녹지지역)(안)에 따른 보전산지 지정(안)

- 지정일: 예정지 공고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따라 별도 고시

2. 관계도면 열람 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산림정원과

3.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의견 제출방법: 공고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내에 의견제출서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식)의견제출서: 서구 홈페이지(https://www.seo.incheon.kr/open_content/main/) 고시공고 게시판 [공고문: 보전산지 지정(산지구분도)(안) 공고] 붙임 파일 참조

5. 산지구분도안 공고 및 열람 일정에 대한 통지는 본 공고로 같음하며, 개인

이나 단체에게 개별통지 하지 않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산림정원과(☎032-560-47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4 - 1716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을 위한 행정예고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 보행자우선도로를 조성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조성의 취지와 내용을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2024. 8. 26.
서 구 청 장

- 1. 목 적 :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에 따른 의견 수렴
- 2. 예고방법 : 서구청 홈페이지 (<http://www.seo.incheon.kr>) 게재
- 3. 행정예고 기간 : 2024. 8.26. ~ 2024. 9. 9. (14일간)
- 4. 의견제출 기간 : 2024. 8.26. ~ 2024. 9. 9. (14일간)
- 5. 관련근거
 -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3(보행자우선도로의 조성)
- 6. 지정위치 : 붙임1 참조

연번	위 치	상세위치		비고
		시점	종점	
1	가좌동 195번지 일원	가정로126번길 17	가석로126번길 9	L=259m B=8m
2	가좌동 200번지 일원	신진말로 16	신진말로14번길 33	L=382m B=9m
3	신현동 107-42번지 일원	염곡로397번길 15	염곡로 395	L=162m B=7~13.5m
4	검암동 536-1번지 일원	검암로2번길 37-11	검암로20번길 52	L=319m B=6m

7. 의견제출

가. 위 행정예고(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24년 9월 9일까지 서구청 도로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의견제출 서식 : [붙임 2]

다. 제출방법 및 문의안내

- 직접방문, 우편 또는 팩스
- 주 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서구청 도로과 보도관리팀)
- 연락처 : 032-560-3392(도로과 보도관리팀)
- 팩 스 : 032-560-2764(팩스 제출 시 유선 확인 요청바람)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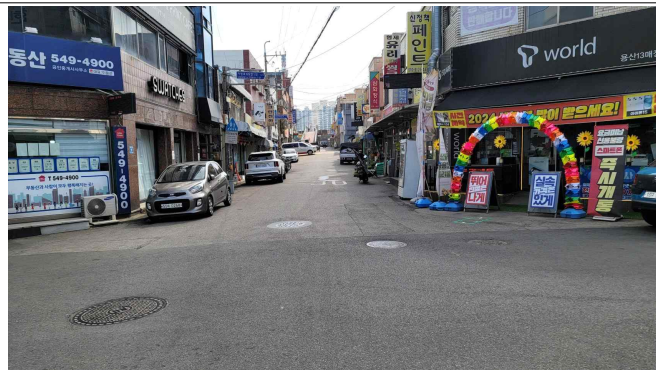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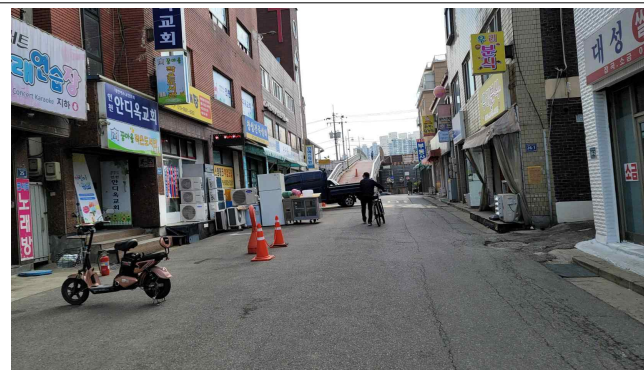
○ 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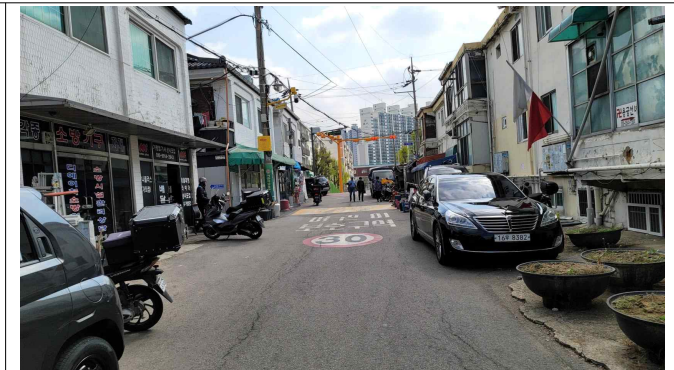
① 가좌중 보행자우선도로(L=259m, B=8.0~9.0m)



시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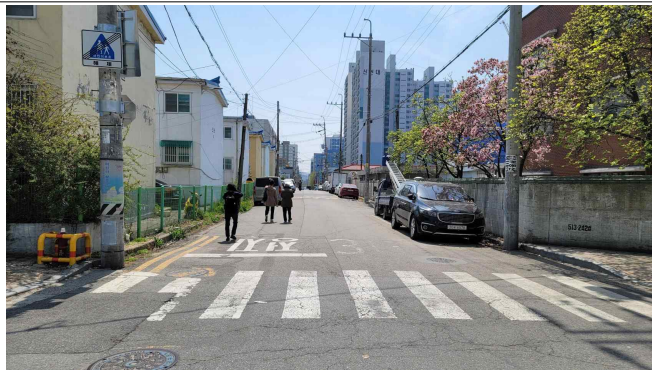


중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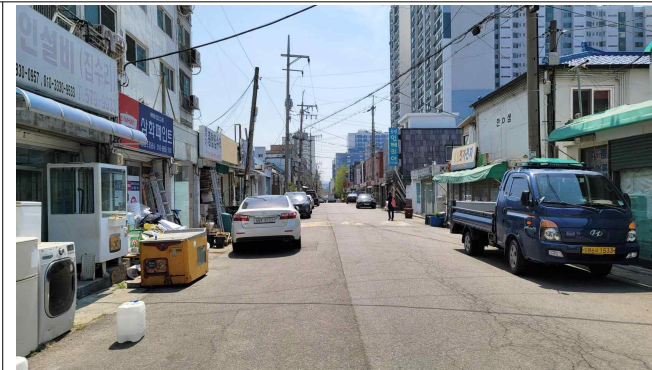


종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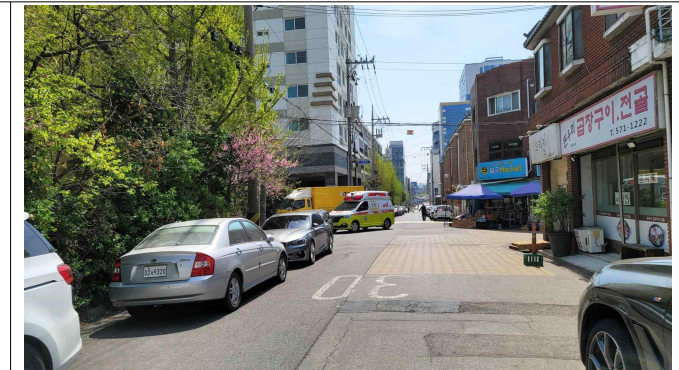
② 건지초 보행자우선도로(L=382m, B=9.0m)



시점부



중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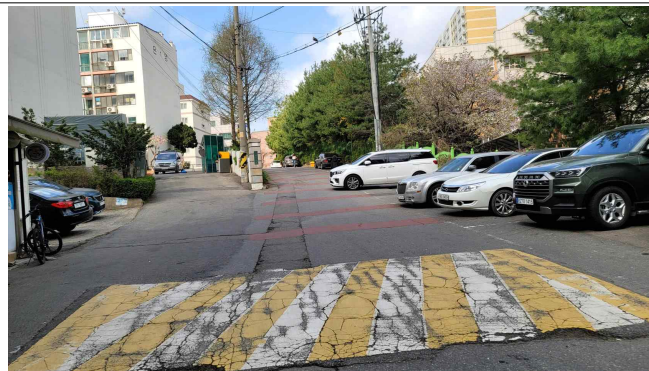


종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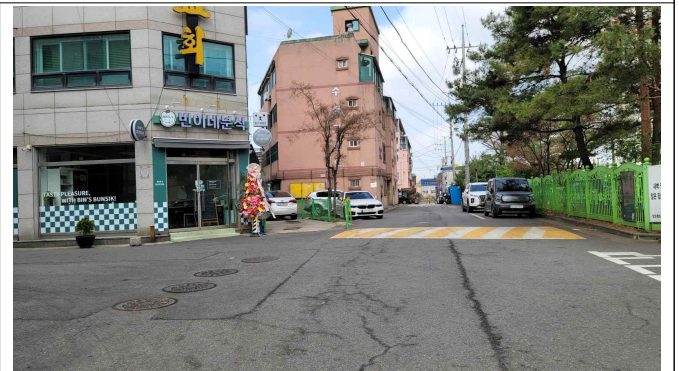
③ 신현고 보행자우선도로(L=162m, B=7.0~13.5m)



시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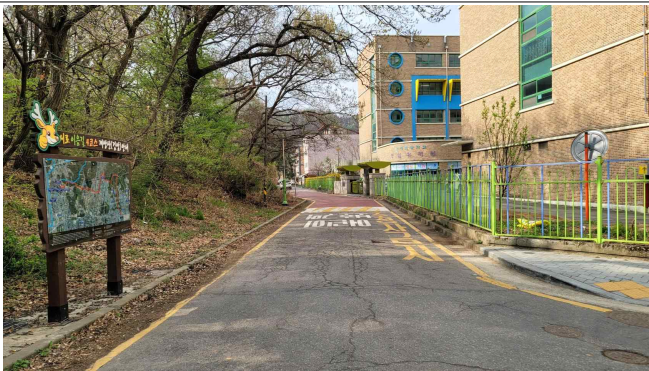


중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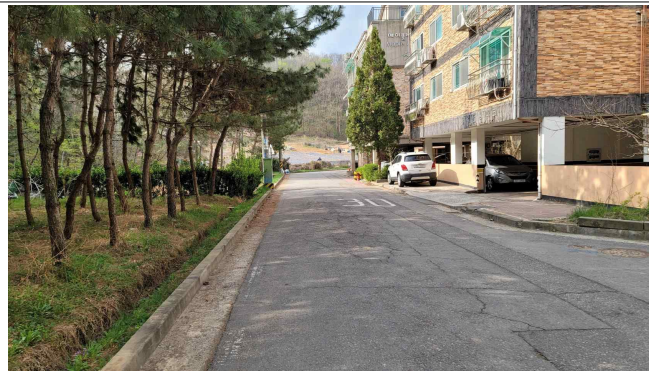


종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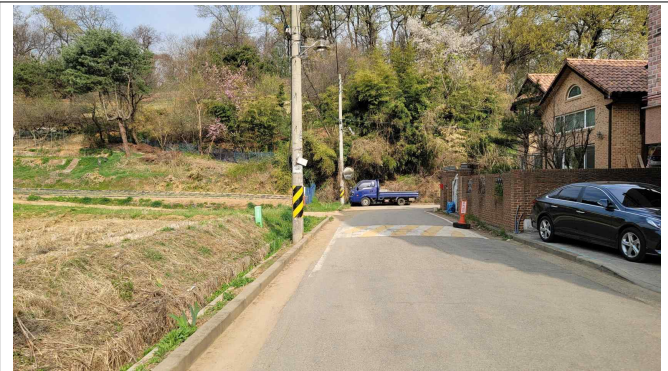
④ 은지초 보행자우선도로(L=319m, B=6.0m)



시점부



중간부



종점부

붙임2.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1718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 8.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 및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지 않게 규정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불부합 조례안 정비
 -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이 ‘기부채납일’ 이 아닌, ‘사용허가를 받은 날’ 이 되도록 개정 (안 제18조)

- 대부료 및 사용료 분할납부 조건 개정(안 제36조제2항)
- 변상금 분할납부 조건 개정(안 제62조제1항)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장애인 차별적 용어)’에 따른 용어 정비(별표)
 - 장애자 → 장애인

3. 의견제출

- . 제출기일 : 2024년 9월 18일까지
 - .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 .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 제출할곳 : 인천광역시 서구청 재무과
 - 주 소 : (22726)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별관 2층 재무과
 - 전 화 : ☎ (032)560-4167, FAX (032)560-2720
- * 의견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 바랍니다.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의: 감사실, 가정보육과 합의되었음
- 기타: 해당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사항 및 행정편의 등을 이유로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게 규정된 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불부합 조례안 정비
 -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이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를 받은 날’이 되도록 개정 (안 제18조)
 - 대부료 및 사용료 분할납부 조건 개정(안 제36조제2항)
 - 변상금 분할납부 조건 개정(안 제62조제1항)
-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장애인 차별적 용어)’에 따른 용어 정비(별표)
 - 장애자 → 장애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별첨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감사실, 가정보육과와 합의
- 라. 기 타: 해당사항 없음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를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36조의 제목“(대부료등의 납기)”를“(대부료등의 납부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50만원 초과: 6개월 2회 이내 분납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청사·종합회관의 표준 설계면적기준

1. 본청

가.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단위 : m²)

구분 기관별	기관장실	부기관장실	실.국장실	실.과장실	담당 또는 계장	직 원
구분청	99	38.88	38.88	17.92	7.65	7.2
동청사	23	14.80	-	-	7.65	7.2

나. 부속공간 면적

(단위 : m²)

실명		설계기준					비고
회의실 (사용인원)	24명 미만	25~49명	50~99명	100~149명	150~199명	200명이상시 면적 = 0.8m ² ×사용인원	
	4~2.4m ² /인	2.6~1.5m ² /인	2~1.2m ² /인	1.6~1m ² /인	1.2~0.9m ² /인		
상황실	구	2.64 × (과장급 이상 수 + 동장 수)					
서비스 및 동선 부분	화장실	100명 미만	100명~200명	200명 이상			
		0.43m ² / 인	0.40m ² / 인	0.33m ² / 인			
	엘리베이터	(12.87~19.6m ²) × 대수					
식당		1.63m ² × 공무원 수 × 0.3					
휴게실		2.0m ² × 공무원 수 × 0.15					
민원실		{(6.55m ² ×민원담당공무원 수)×1.1} + {(0.13m ² ~0.2m ² ×민원인 수×0.5)}					민원인 공간확장 가능
숙직실	1인	2~3인	4인 이상				
	15.12m ² / 인	11.52m ² / 인	8.64m ² / 인				
자료실		(0.3~0.4m ²) × 공무원수					
창고		0.72m ² /인 ~ 0.85m ² /인					
전산실		9.79m ² × 담당직원 수 × 1.2					
민방위대피시설		개소당 660m ² 이상					평시 충무시설로 이용

다. 설비관계 면적

(단위 : m²)

실 명		설 계 기 준					
공조 기계실	연 면 적	~3,000	3,000~7,500	7,500~13,000	13,000~18,000	18,000~23,000	23,000~
	연면적대(%)	4.5~7.0	4.0~6.0	3.5~4.5	3.0~4.0	2.5~3.5	2.3~2.8
층장비실	사무공간	500m ²		800m ²		1,000m ²	
	층장비실	6.6m ²		8.4m ²		10.2m ²	
주장비실	사무공간	~1,000	1,000~4,000	4,000~8,000	8,000~12,000	12,000~16,000	
	주장비실	14	37	74	111	149	
	사무공간	16,000~20,000	20,000~24,000	24,000~28,000	28,000~32,000		
	주장비실	186	223	260	297		

라. 공용면적 : [(직무면적+부속공간면적+설비관계면적) x 30 ~ 40%]

2. 의회 청사

(단위 : m²)

구 분		실 명	면 적 기 준	비 고	
의 원 실	a	의 장 실	집행기관장실 면적 준용		
		부의장실	집행기관 부기관장실 면적 준용		
		위원장실	집행기관 살국장실, 살과장실 면적 준용	구 위원회 수 : 3개	
회 의 실	b	본회의장	의원 수 × 5 + 방청객 수* × 1.5m ² 이상		
		회 의 실	의원 수 × 3.3m ²	면적범위내에서 적정한 규모로 분할	
		위원회실	의원 수 × 8.2m ²	위원회 수 : 3개	
부 속 공 간	c	사무국장실	38.88 ~ 64.0m ²		
		사 무 실	직원 수 × 7.2m ²		
		자료실 및 도서실	198 ~ 297m ²		
		대기실	의 원	의원 수 × 2.5m ²	
	기 자		50m ²		
	운전기사		운전기사 수 × 1.8m ²		
	d	휴게실	의 원	의원 수 × 2m ²	
			직 원	직원 수 × 2m ²	
			방청객	방청객 수* × 2m ²	
	당 직 실	2인실 기준 15m ²			
	화 장 실	시 : 45~47m ² 군 : 36~77m ² 구 : 44~46m ²			
	기 타	예비실(50m ²)을 1개소이상 확보	창고 / 예비실 등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 + b + c) × 3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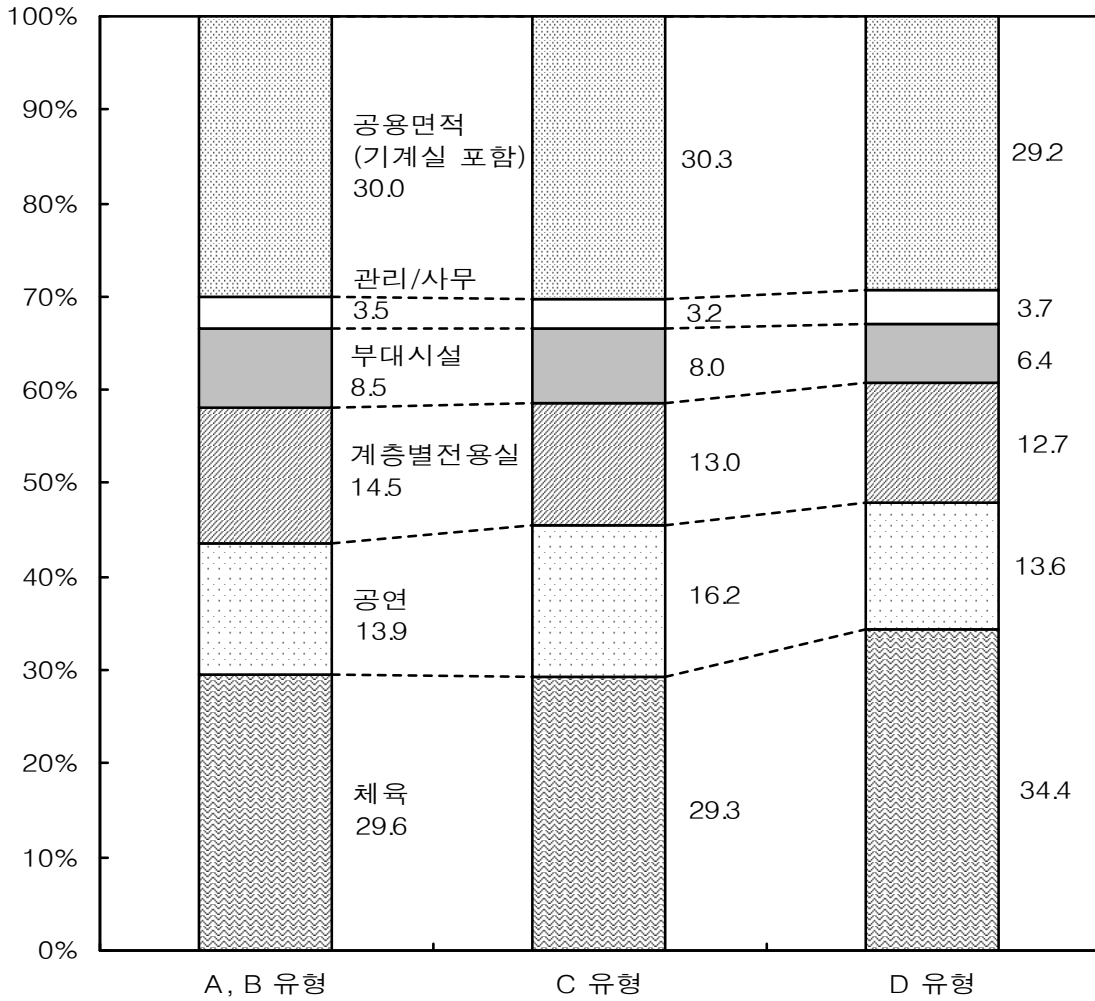
* 방청객 수 = 인구 수 × 0.000015 + 50

3. 종합회관

가. 인구 규모별 설계유형

유형	인구	수용시설설정
A	30-5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6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2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8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6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B	15-30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유형과 대등한 시설을 구비하되 각 공간의 규모면에서 A유형의 약 83% 정도가 되도록 각 실을 계획한다. - 농구, 배구, 핸드볼경기 등을 다목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체육관을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기능으로서 500석 규모의 공연장을 마련한다. - 체육시설은 고정석 1,000석 및 가동석 400석의 관람석을 확보하고 대규모 집회 행사시에는 경기장에서 대략 3,000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집회나 행사를 위해서 경기장내에 무대장치를 마련한다. - 500석 규모의 전문적인 공연장을 위하여 무대부대시설 및 분장실, 연습실 그리고 공용공간인 로비, 라운지 등의 시설을 충분히 고려한다. - 각 계층별 전용실 및 공용시설, 식당, 매점, 휴게공간 등의 각종 시설공간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종합시설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C	10-15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용하는 체육성격은 농구 및 배구경기이며 고정식 스탠드의 규모를 다소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공연장 규모는 400석이나 A유형보다 각종 부대시설의 면적이 축소, 조정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규모에 따라 각 시설별로 수용개설을 줄이거나, 규모의 축소가 가능하나 규모 축소에 따른 각종 활동의 위축 등은 될 수 있으면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계획을 조정함이 바람직하다.
D	10만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구경기 위주로 체육경기장 규모를 축소할 수 있으며, 공연장의 경우 200석 규모 정도의 소공연 전문 성격으로 마련하여 공연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한다. - 공연 및 체육시설의 면적을 상당부분 감소시키고, 계층별 전용실 및 관리, 사무시설을 수용 인원에 따라 부분적으로 면적이 조정 가능하나, 대부분의 시설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전체규모가 소규모이나 시민체육이나 전문적인 공연 등으로 이용빈도의 증대와 활발한 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각 유형별 면적 배분비



다. 유형별 면적기준

(단위 : m²)

구 분	A유형 (인구30-50만)	B유형 (인구15-30만)	C유형 (인구10-15만)	D유형 (인구10만미만)	비 고
순 면 적 (Net Area)	6,600	5,494	3,955	2,313	
공용면적(기계실포함)	2,827	2,365	1,724	958	
연면적 (Gross Area)	9,427	7,851	5,679	3,341	·기능별 공간 연결시 ·발생되는 공용면적은 ±5~10%를 별도로 고려한다. ·주차공간은 제외된 면적임
N / G 비	70.0%	70.0%	69.6%	69.2%	

1) 공연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극장	객 석	480	400	320	160
	무 대	290	240	240	120
	연습실	55	55	50	30
	분장실(남,여)	41	35	24	10
	분장실전용화장실	11	9	7	3
	약실 (1)	14	12	10	15
	약실 (2)	14	12	10	-
	소계 ①	905	763	661	338
부속 시설	도구비치창고	216	180	120	40
	도구반입실	33	-	-	-
	영사실	48	40	30	20
	음향실	36	30	30	20
	기기실(무대)	36	30	25	-
	조명실	24	20	20	20
	측벽투광실	12	12	12	-
	방송중계실	12	10	10	-
	소계 ②	417	322	247	100
합계	계 ① +②	1,322	1,085	908	438
	공용부분	881	723	605	292
	합 계	2,203	1,808	1,513	730

2) 계층별 전용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아동실	아동실(1)	68	60	30	30
	아동실(2)	68	60	30	-
	부속창고	6	4	4	4
	소계 ⑤	142	124	64	34
청소년실	청소년실(1)	60	50	50	50
	청소년실(2)	40	35	-	-
	소계 ⑥	100	85	50	50
노인실	노인실(남)	60	50	50	30
	노인실(여)	60	50	50	30
	휴게실	36	30	30	-
	주 방	8	6	-	-
	건강상담실	30	24	10	-
	소계 ⑦	194	160	140	60
부녀실	부녀실(1)	120	108	50	50
	부녀실(2)	120	108	50	50
	부녀실(3)	35	35	35	-
	소계 ⑧	275	251	135	100
공용 시설	강의실	75	60	60	60
	회의실(1)	90	70	70	70
	회의실(2)	90	70	70	35
	회의실(3)	70	70	-	-
	회의실(4)	40	35	-	-
	다목적실	174	144	120	-
	주 방	18	14	8	-
	기자재창고	18	14	12	-
	전시코너	36	30	-	-
	소계 ⑨	611	507	340	165
합계	계 ⑤~⑨	1,322	1,127	729	409
	공용부분	712	607	373	220
	합 계	2,034	1,734	1,122	629

3) 부대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전시 시설	전시실	216	162	108	54
	작업실	43	35	23	12
	창고	43	35	23	12
	소계 ⑩	302	232	154	78
도서 시설	도서실	308	257	147	100
	소계 ⑪	308	257	147	100
식당 휴게 시설	식당	85	70	70	-
	주방 및 창고	38	32	32	-
	휴게실	82	70	46	28
	소계 ⑫	205	172	148	28
합계	계 ⑩~⑫	815	661	449	206
	공용부분	349	283	192	88
	합계	1,164	944	641	294

4) 체육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경기장	경기장	1,344	1,104	714	646
	갱의실(남)	27	21	21	12
	샤워실(남)	27	21	21	12
	갱의실(여)	15	12	12	6
	샤워실(여)	14	12	12	6
	부속실(1)	72	60	40	20
	부속실(2)	48	40	40	30
	대기실	26	22	22	15
	장비실	145	120	75	60
	무대(집회용)	240	200	151	95
	트레이닝실 (소체육실)	120	100	50	-
	소계 ③	2,078	1,712	1,158	902
관람석	관람석	720	600	480	210
	상부발코니	-	-	-	-
	소계 ④	720	600	480	210
합계	계 ③+④	2,798	2,312	1,638	1,112
	공용부분	700	578	410	278
	합계	3,498	2,890	2,048	1,390

5) 기타시설

(단위 : m²)

구 분	시설명	A유형 면적	B유형 면적	C유형 면적	D유형 면적
사무실	관리사무실	87	72	51	22
	관장실	64	64	64	30
	응접 및 탕비실	26	26	26	26
	소회의실	32	27	20	10
	숙직실	12	10	10	10
	안내인방송코너	12	10	10	-
	직능단체사무실(1)	55	50	50	50
	직능단체사무실(2)	55	50	-	-
	소계 ㉓	343	309	231	148
합 계	계 ㉓	343	309	231	148
	공용부분	185	166	124	80
	합 계	528	475	355	228

4. 보건소

(단위 : m²)

구분		실명	면적기준
			시 보건소
진료활동	a	접수 / 수납	13.86
		의무기록창고	10.89
		대기공간	48.00
		약국조제실	13.86
		약국창고	13.86
		일반진찰실	53.46
		처치실	17.80
		치과진찰실	27.54
		치과장비실	2.70
		치과용 암실	2.16
		소독실	8.91
		예방접종실	17.82
		소아놀이실	9.90
		수유실	7.92
		화장실	31.68
			장애인용 화장실
보건사업	b	결핵관리실	17.82
		상담실	35.64
		방사선실	81.66
진료지원	c	임상검사실	65.34
사무부문	d	소장실	33
		전실(탕비실)	9.90
		소회의실	17.82
		사무실	직원 수 × 7.2 m ²
		다목적실	144
		창고	59.4
		여자휴게실	40
		당직실	13.86
		화장실	17.82
설비	e	기계실 및 전기실	66
연계공간		로비·복도·계단	(a+b+c+d+e) × 30~4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8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영 제17조를 따르되 그 기산일은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p>	<p>제18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를 따르며,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p>
<p>제3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p> <p>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p> <p>1.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p> <p>2.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p> <p>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p>	<p>제36조(대부료등의 납부기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p>

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50만원 이하: 3개월 이내 2회 분할 납부

2.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6개월 이내 3회 분할 납부

3. 1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할 납부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
에 재해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 기
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중전 제4항에서 이동 2017.3.29.)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 설>

제62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

-----.

1. 50만원 초과: 6개월 2회 이내 분할 납

<p>1. ~ 3. (생략)</p> <p>② (생략)</p>	<p>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	--

관계법령 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허가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 본문의 사용허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사용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4., 2021. 4. 20., 2022. 11. 15.>

1.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2021. 4. 20.>[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21. 4. 20.]

제22조(사용료)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① ~ ⑦ 생략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2023. 8. 22.>

⑨, ⑩ 생략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생략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12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3. 8. 22., 2024. 7. 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⑤ 생략

■ 법제처“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상 장애인 차별적 용어

차수	시기	정비 대상 용어	순화 용어
제2차	2009년	장애자	장애인

의견제출서

1. 자치법규명		
2.	성명(단체명/대표자)	
	주 소	
3. 의견		
4.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전화 :)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1719호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306호(2022. 11. 7.)로 개발계획 수립(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한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2조에 따라 개발계획 변경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8.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개요

- 구 역 명: 경서3 도시개발사업
-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24-66번지 일원
- 사업면적: 368,095.7m²
 - 기반시설 공사 완료구간과 미완료구간에 대한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 * 1단계 355,268.7m², 2단계 12,827m²
- 사업기간: 2010. 8. 23. ~ 2024. 12. 31.

2.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

- 시 행 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시행방식: 환지방식

3. 주요 변경내용

- 토지이용 및 기반시설 계획(변경)

구 분	기정		변경						비 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증감		1단계	2단계	
					면적(㎡)	구성비(%)	면적(㎡)	면적(㎡)	
합 계	368,095.7	100.0	368,095.7	100.0	-	-	355,268.7	12,827.0	
상업시설용지	167,657.1	45.6	183,616.9	49.9	증)15,959.8	증) 4.3	174,721.1	8,895.8	
복합시설	50,786.3	13.8	66,746.1	18.1	증)15,959.8	증) 4.3	66,746.1	-	
근린생활시설	92,577.6	25.2	92,577.6	25.2	-	-	87,665.9	4,911.7	
업무시설	24,293.2	6.6	24,293.2	6.6	-	-	20,309.1	3,984.1	
유통시설용지	35,548.4	9.6	19,588.6	5.3	감)15,959.8	감) 4.3	19,588.6	-	
도시지원시설	12,976.0	3.5	12,976.0	3.5	-	-	12,976.0	-	
공공지원시설	6,612.6	1.8	6,612.6	1.8	-	-	6,612.6	-	
대형할인점	15,959.8	4.3	-	-	감)15,959.8	감) 4.3	-	-	
공공시설용지	160,546.3	43.6	160,075.5	43.6	감) 470.8	-	156,144.3	3,931.2	
도 로	91,036.0	24.7	90,741.7	24.7	감) 294.3	-	88,329.0	2,412.7	
보행자도로	5,998.8	1.6	5,998.8	1.6	-	-	5,295.9	702.9	
주차장	6,391.2	1.7	6,391.2	1.7	-	-	6,391.2	-	
	(14,671.9)		(14,671.9)				(14,671.9)		
공 원	36,454.8	10.0	36,454.8	10.0	-	-	36,454.8	-	
녹 지	8,615.6	2.3	8,439.1	2.3	감) 176.5	-	7,648.5	790.6	
광 장	11,999.9	3.3	11,999.9	3.3	-	-	11,999.9	-	
전기공급설비	(100.0)		(100.0)		-	-	(100.0)	-	
가스공급설비	50.0	0.0	50.0	0.0	-	-	25.0	25.0	
기타시설용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4,343.9	1.2	4,814.7	1.2	증) 470.8	-	4,814.7	-	

4. 관계도서의 공람기간,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

-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휴일 미포함)
- 공람장소: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계획과(☎032-560-4782~3)
- 공람내용: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안)
- 의견제출 방법: 공람기간에 의견서(서면) 제출

4.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계획과에 갖추어 놓았으며, 의견이 있으신 주민과 관계인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램 의 견 서

사 업 명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공람내용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안)		
제출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의 견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4 - 1733호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해든어린이공원) 결정(변경) 관련 주민 공람 공고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해든어린이공원) 결정(변경) 입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4. 8.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원개요

- 공 원 명 : 해든어린이공원
- 공원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318-9번지
- 면 적 : 8,251.8㎡

2.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입안사유

- 舊 인천 서구 당하동553번지 인근의 소(국)1-205호선 막다른 도로로 설계되어 인접한 해든어린이공원 면적 일부를 축소하여 회차로를 설치하고자 함.

3.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 입안 총괄조서(붙임1)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

- 시설결정 조서 및 관계도면 등 게재 생략된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

5.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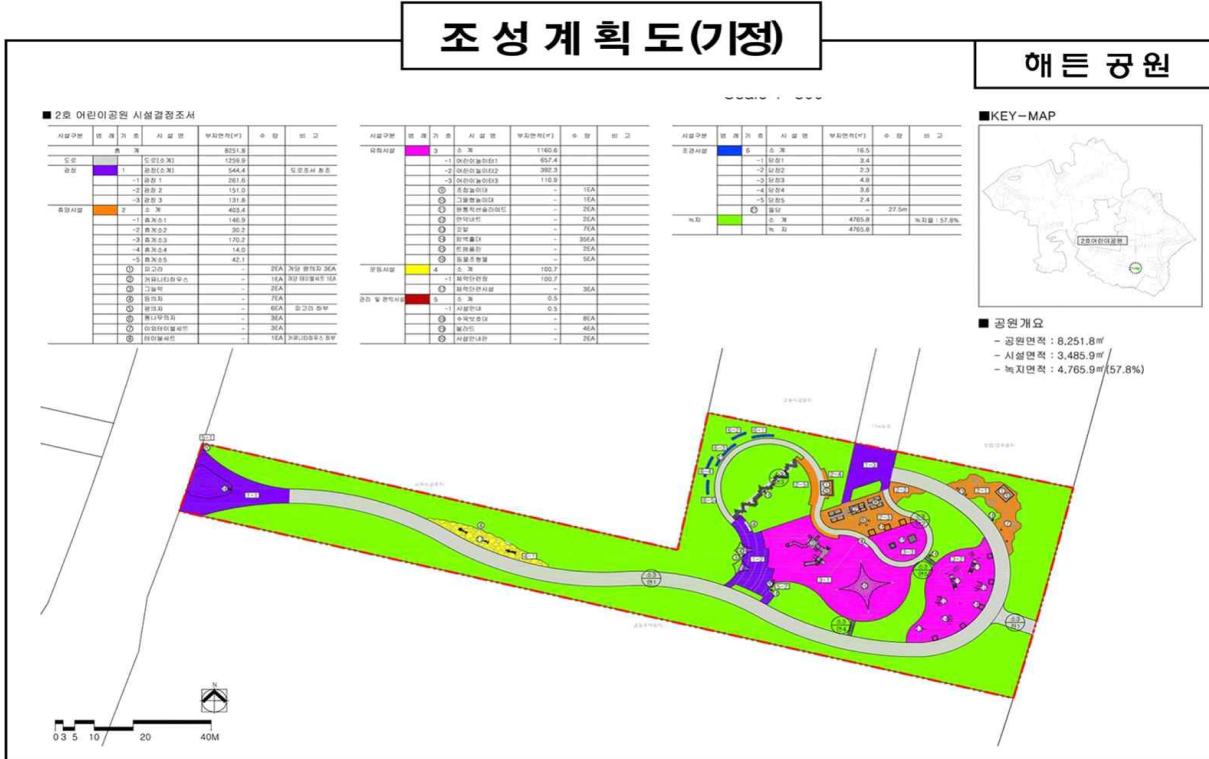
6.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과 (☎032-560-3323)

붙임1) 총괄조서(해든어린이공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 축 물			공 작 물 (기)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동수 (동)	바닥 면적 (㎡)	연 면적 (㎡)			
계	8,251.8	3,486.0	-	-	-	97	8,069.5	3,438.5	-	-	-	97	감)182.3㎡	
공 원 시 설	시 설 계	3,486.0	3,486.0	-	-	-	97	3,438.5	3,438.5	-	-	-	97	감)47.5㎡
	기 반 시 설	소계	1,804.3	1,804.3	-	-	-	1,710.0	1,710.0	-	-	-	-	감)94.3㎡
		도로	1,259.9	1,259.9	-	-	-	1,285.8	1,285.8	-	-	-	-	증)25.9㎡
		광장	544.4	544.4	-	-	-	424.2	424.2	-	-	-	-	감)120.2㎡
	조경시설	16.5	16.5	-	-	-	16.5	16.5	-	-	-	-	돌담 27.5m	
	휴양시설	403.4	403.4	-	-	-	25	399.5	399.5	-	-	-	25	감)3.9㎡
	유희시설	1,106.6	1,106.6	-	-	-	55	1,160.6	1,160.6	-	-	-	55	
	운동시설	100.7	100.7	-	-	-	3	100.7	100.7	-	-	-	3	
	교양시설	-	-	-	-	-	-	-	-	-	-	-	-	-
	관리 및 편익시설	0.5	0.5	-	-	-	14	0.5	0.5	-	-	-	14	
녹지 및 기타	4,765.8	-	-	-	-	-	4,631.0	-	-	-	-	-	감)134.5㎡ 녹지율: 57.39%	
시설율(% (법정60%이하)	(3,485.9㎡ ÷ 8,251.8㎡) × 100 = 42.24%						(3,438.5㎡ ÷ 8,069.5㎡) × 100 = 42.61%							
건폐율(% (법정 5%이하)	(0.0㎡ ÷ 8,251.8㎡) × 100 = 0.0%						(0.00㎡ ÷ 8,069.5㎡) × 100 = 0.00%							

붙임2) 조성계획도(해든어린이공원)

- 조성계획총괄도(기정)



- 조성계획총괄도(변경)

